

서울특별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심사 보고서

| | |
|----------|-----|
| 의안 번호 | 812 |
|----------|-----|

2019년 8월 29일
도시안전건설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발의일자 및 발의자 : 2019년 8월 2일, 성희제 의원(찬성자 17명)
- 나. 회부일자 : 2019년 8월 13일
- 다. 상정일자 : 제289회 임시회 제1차 도시안전건설위원회
(2019년 8월 29일 상정, 원안가결)

2. 제안설명의 요지 (제안설명자 : 성희제 의원)

가. 제안이유

- 현행 「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」에 따라 지하시설물 관리자가 개별적으로 시행해야 했던 주변지반에 대한 공동(空洞)조사를 서울시가 일괄로 대행하고 사후 정산할 수 있도록 공동(空洞)조사 대행 및 비용분담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기 위함.

나. 주요골자

- (1) “공동(空洞)” 및 “공동(空洞)조사”의 정의를 신설함(안 제2조제5호 및 제6호).
- (2) 공동조사 대행 및 비용분담의 원칙을 규정함(안 제12조).

(3) 지하안전위원회 존속기한을 명시함(부칙 제2조).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규 : 「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」

나. 예산조치 : 해당 없음

다. 기타 : 해당사항 없음

4. 검토보고요지 (수석전문위원 이상근)

■ 개 요

- 본 개정안은 서울시가 각 지하시설물의 관리주체를 대신하여 공동(空洞)조사를 대행할 수 있는 근거와 이에 소요되는 비용의 분담원칙을 규정하는 한편, 지하안전위원회의 존속기한을 부칙에 설치하려는 것임.

[표] 개정안 주요내용

| 조항 | 현 행 | 개 정 안 |
|--------------|-------|---|
| 제2조제5호 및 제6호 | <신 설> | 공동(空洞) 및 공동(空洞)조사의 정의 신설 |
| 제12조 | <신 설> | <p>① 시장은 지하시설물관리자 소관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해 공동조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수탁하여 대행 가능</p> <p>② 시장은 지하시설물관리자에게 공동조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매년 정산하여 분담하게 할 수 있음.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- 지하시설물관리자가 시장에게 공동조사를 위탁하는 경우- 시장이 실시하는 공동조사 대상이 지하시설물관리자의 공동조사 대상과 중복되는 경우 <p>③ 시장은 공동조사 비용 정산 시 해당 지하시설물관리자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함.</p> |
| 부칙 제2조 | <신 설> | 서울특별시 지하안전위원회의 존속기한은 5년으로 하되, 운영성과 등을 평가해 존속기한 연장 가능 |

■ 용어정의 추가 신설에 관한 의견(안 제2조제5호 및 제6호)

- 안 제2조제5호 및 제6호의 용어정의 추가는 국토교통부 「지

하안전관리 업무지침」상 “공동(空洞)” 및 “공동(空洞)조사”에 대한 정의를 인용하고 있으며, 이는 안 제12조의 공동조사 관련 내용 신설에 필요한 용어를 정의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특이 사항은 없음.

- 공동(空洞): 지표하부에 발생한 빈 공간으로 확대될 경우 지반침하 등이 발생할 수 있는 공간
- 공동(空洞)조사: 지하물리탐사를 이용하여 지하시설물 및 주변지반에 침하·공동(空洞) 등의 발생유무를 파악하는 행위

■ 공동(空洞)조사 대행 규정 신설에 관한 의견(안 제12조)

- 안 제12조는 공동조사 대행 및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.
- 「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」(이하 “법”)제34조제1항¹⁾에 따르면 ‘지하시설물관리자는 소관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하여 안전관리규정에 따른 안전점검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- 1) 제34조(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한 안전점검 등) ① 지하시설물관리자는 소관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하여 안전관리규정에 따른 안전점검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②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관할 구역에 있는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여야 한다. 다만,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안전점검 결과를 검토하여 지반침하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.
③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 실태점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 및 전문가와 협동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.
④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 실태점검 결과 지반침하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해당 지하시설물관리자 및 해당 토지의 소유자·점유자에게 통보하여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야 하며, 해당 지하시설물관리자에게 제35조제1항에 따른 지반침하위험도평가의 실시를 명할 수 있다.
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하여, 시·도지사는 관할 구역에 있는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한 안전관리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현장조사를 할 수 있다.

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'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지하시설물관리자는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한 안전점검 일환으로 지표하부에 공동의 존재여부를 조사할 의무를 부과받고 있음.

- 한편, 서울시 역시 같은 법에 의해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고 법 제정 이전부터 서울시 도로의 통행안전을 위해 공동조사를 실시해 오고 있는 상황임.

[표] 서울시 공동(空洞)조사현황('19.7월말 기준)

| 구 분 | | 계 | '14. | '15. | '16. | '17. | '18. | '19.7. |
|--------------|-------|--------|-------|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-|
| 도로연장 (km) | 1,574 | 용역 | 1,338 | 18 | 75 | 321 | 377 | 298 |
| | | 자체 | 236 | - | 13 | 36 | 44 | 86 |
| 조사연장 (km) | 9,269 | 용역 | 8,295 | 61 | 541 | 1,980 | 2,065 | 1,993 |
| | | 자체 | 974 | - | 73 | 206 | 270 | 253 |
| 공동(개) | 3,516 | 용역 | 3,313 | 37 | 238 | 1,054 | 1,241 | 644 |
| | | 자체 | 203 | - | 13 | 50 | 39 | 45 |
| 용역비(백만원) | 용역 | 11,482 | (무상) | 809 | 3,147 | 3,040 | 2,316 | 2,120 |

- 따라서, 서울시 지하시설물의 53%(27,739km)가 가스, 전기, 통신, 난방 등 서울시가 아닌 타 기관이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 ([표] 참조)이기 때문에 각 지하시설물관리자가 해당 지하시설물의 주변지반에 대한 공동조사를 개별적으로 실시할 경우 서울시와의 중복조사 및 이로 인한 불필요한 조사비용 낭비 등을 야기할 소지가 있음.

[표] 서울시 지하시설물관리자 현황

| 분 야 | 市 주관부서 | 지하시설물 관리자 |
|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|
| 상수도 | 서울시상수도사업본부 (수도사업소, 정수센터) | 수도사업소(8),정수센터(6) 한국수자원공사 인천상수도사업본부 하남시 광명시 |
| | 하천관리과 | 서울시설공단 |
| 하수도 | 물재생계획과 물재생시설과 도로시설과 | 자치구(25) 물재생센터(4) 서울시설공단 |
| 전기설비 | 녹색에너지과 | 한국전력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|
| 전기통신설비 | 정보시스템담당관 | (주)KT CJ헬로 SK브로드밴드(주) SK텔레콤 드림라인(주) 세종텔레콤(주) (주)LG유플러스 (주)딜라이브 (주)티브로드 (주)현대HCN 나래에너지서비스 위례에너지서비스 |
| 가스공급시설 | 녹색에너지과 | 한국가스공사 (주)예스코 서울도시가스(주) (주)대륜이엔에스 코원에너지서비스(주) 나래에너지서비스 위례에너지서비스 |
| 열수송관 | 녹색에너지과 | 서울에너지공사 GS파워주식회사 한국지역난방공사 나래에너지서비스 위례에너지서비스 |
| 공동구 | 도로시설과 | 서울시설공단 |
| 지하도로 | 도로시설과 | 자치구(25) 서울시설공단 |
| 지하광장 | 주차계획과 | 서울교통공사 |
| 도로 | 도로시설과 | 도로사업소 |

| | | |
|-------|-------|--------------|
| 도시철도 | 도시철도과 | 공항철도(주) |
| | | 서울시메트로9호선(주) |
| | | 우이신설경전철(주) |
| | | 서울교통공사 |
| | | 네오틸랜스 |
| 철도 | 도시철도과 | 한국철도시설공단 |
| 주차장 | 주차계획과 | (주)서울메트로환경 |
| | | 서울시설공단 |
| 지하도상가 | 건설혁신과 | 서울시설공단 |

- 이에 안 제12조제1항은 시장이 타 기관의 지하시설물 관리자로부터 공동조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수탁받아 대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,
- 기존에 각 기관별로 시행해야 했던 공동조사를 서울시로 일원화할 수 있게 함으로써 공동조사의 신뢰성과 효율성을 제고함은 물론 타 기관 지하시설물관리자의 비용 절감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됨.
- 다음으로, 제2항부터 제3항은 “지하시설물관리자가 시장에게 공동조사를 위탁하는 경우”와 “시장이 실시하는 공동조사 대상이 지하시설물관리자의 공동조사 대상과 중복되는 경우”에 대하여 서울시가 대행한 공동조사비용을 매년 정산하여 지하시설물관리자에게 분담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,
- 공동조사 비용 정산 시 지하시설물관리자와 사전에 협의토록 규정하고 있는데, 이는 형평에 맞는 합리적인 정산을 위한 것으로 정산과정에서 불필요한 논쟁이나 행정력 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정산기준을 마련하고 위수탁 계약서 체결과정에서 공동조사 물량 및 방법, 기간 등에 대한 가급적 정확한 추

계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임.

- 참고로, 지난 7월 25일 서울시는 (주)KT, 한국전력공사, 한국가스공사, 한국지역난방공사, 한국수자원공사와 지하시설물 정보체계 구축을 위한 정보공유, 합동 안전점검 및 훈련, 공동 조사 위탁 등을 주요골자로 하는 지하시설물 통합 안전관리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음.

■ 지하안전위원회 존속기한(5년) 명시에 관한 의견(안 부칙 제2조)

- 안 부칙 제2조는 지하안전위원회의 존속기한을 5년으로 하되,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.
- 이는 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 제80조의3²⁾ 및 「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·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11조³⁾에 따른 것으로, 법상 의무설치 위원회가 아니라는 측면에서 존속기한을 5년으로 명시한 것으로 별다른 특이사항은 없음.

5. 질의 및 답변 요지 : 생략

6. 토론요지 : 없음

2) 제80조의3(자문기관의 존속기한) ① 지방자치단체는 자문기관을 설치할 때에 계속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자문기관의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.
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은 5년의 범위에서 자문기관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한다.

3) 제11조(위원회의 존속기한) ① 시장 등은 위원회를 설치할 때에 계속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존속기한을 조례 또는 규칙에 명시하여야 한다.
② 제1항의 존속기한은 5년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한다.

7. 소위원회의 심사보고 요지 : 해당 없음

8. 수정안의 요지 : 해당 없음

9. 심사결과 : 원안가결(재석의원 전원 찬성)

10. 소수의견의 요지 : 해당 없음

11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 음

서울특별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성흡제 의원 (대표) 발의)

| | |
|----------|-----|
| 의안 번호 | 812 |
|----------|-----|

발의 년월일 : 2019년 08월 02일

발의자 : 성흡제 의원 (1명)

찬성자 : 박순규, 홍성룡, 전병주, 오중석,
이병도, 정진술, 최정순, 김정환,
송아량, 김태호, 김정태, 강동길,
최웅식, 전석기, 김평남, 김기대,
문장길 의원 (17명)

1. 제안이유

- 현행 「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」에 따라 지하시설물 관리자가 개별적으로 시행해야 했던 주변지반에 대한 공동(空洞)조사를 서울시가 일괄로 대행하고 사후 정산할 수 있도록 공동(空洞)조사 대행 및 비용분담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기 위함.

2. 주요골자

- “공동(空洞)” 및 “공동(空洞)조사”의 정의를 신설함(안 제2조 제5호 및 제6호).
- 공동조사 대행 및 비용분담의 원칙을 규정함(안 제12조).
- 지하안전위원회 존속기한을 명시함(부칙 제2조).

3. 참고사항

- 관계법규 : 「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」

나. 예산조치 : 해당없음(비용추계서 비대상사유서 별첨)

다. 기타 : 해당사항 없음.

서울특별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

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5. “공동(空洞)”이란 지표하부에 발생한 빈 공간으로 확대될 경우 지반침하 등이 발생할 수 있는 공간을 말한다.
6. “공동(空洞)조사”란 지하물리탐사를 이용하여 지하시설물 및 주변지반에 침하·공동(空洞) 등의 발생유무를 파악하는 행위를 말한다.

제12조를 제13조로 하고,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2조(공동조사 대행 등) ① 시장은 법 제34조 제1항에 따른 지하시설물관리자가 소관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하여 정기 안전점검을 실시함에 있어 공동조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수탁하여 대행 할 수 있다.

-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하시설물관리자에게 공동조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매년 정산하여 분담하게 할 수 있다.

1. 지하시설물관리자가 시장에게 공동조사를 위탁하는 경우
2. 시장이 실시하는 공동조사 대상이 지하시설물관리자의 공동조사

대상과 중복되는 경우

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공동조사 비용을 정산함에 있어 해당 지하 시설물관리자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.

부 칙

제1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서울특별시 지하안전위원회의 존속기한은 5년으로 하되, 운영성과 등을 평가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| 현 행 | 개 정 안 |
|--|--|
| 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 1. ~ 4. (생략) | 제2조(정의) ----- -----. 1. ~ 4. (현행과 같음) |
| <u><신 설></u> | <u>5. “공동(空洞)”이란 지표하부에 발생한 빈 공간으로 확대될 경우 지반침하 등이 발생할 수 있는 공간을 말한다.</u> |
| <u><신 설></u> | <u>6. “공동(空洞)조사”란 지하물리 탐사를 이용하여 지하시설물 및 주변지반에 침하·공동(空洞) 등의 발생유무를 파악하는 행위를 말한다.</u> |
| <u><신 설></u> | <u>제12조(공동조사 대행 등) ① 시장은 법 제34조 제1항에 따른 지하시설물관리자가 소관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하여 정기 안전점검을 실시함에 있어 공동조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수탁하여 대행할 수 있다.</u> <u>②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하시설물관리자에게 공동조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매년 정산하여 분담하게 할 수 있다.</u> <u>1. 지하시설물관리자가 시장에게 공동조사를 위탁하는 경우</u> |

2. 시장이 실시하는 공동조사 대상이 지하시설물관리자의 공동조사 대상과 중복되는 경우

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공동조사 비용을 정산함에 있어 해당 지하시설물관리자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.

제12조 (생 략)

제13조 (현행 제12조와 같음)